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31호
2019년7월15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감동시정
- 1. 균형있는상생경제
- 1. 사람중심나눔복지
- 1. 품격있는문화관광
- 1. 살기좋은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목 차

【고 시】

○여수시 고시 제2019-2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3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19-1730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안포리 462) /4

○여수시 공고 제2019-1746호 연안어선[정치성 구획어업]감척사업 추가 모집 공고 /5

○여수시 공고 제2019-174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감경공고 /7

○여수시 공고 제2019-174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8

○여수시 공고 제2019-175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9

○여수시 공고 제2019-1755호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 /10

회								
관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자)	점용·사용 장 소	면적 (㎡)	점용·사용 목적	변경사항(허가기간)		피허가자		비고
				변경전	변경후	주 소	성 명	
2019-69 (2019. 7. 15.)	여수시 경호동 604-4번지 지선 공유수면	1,239.28 (직접 719.28 간접 520)	도선정박시설(바지선 및 부잔교)설치(여수경도 골프앤리조트호, 쥬신아해운여객선)	2014. 1. 6. ~ 2019. 1. 5.	2019. 1. 6. ~ 2024. 1. 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 남 개 발 공 사	

2019. 7. 15.

여 수 시 장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62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화양면 안포리 410-14	46	2	12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

여 수 시 장

연안어선[정치성 구획어업] 감척 추가 모집 공고

1. 사업비 및 사업물량

- 사업비/사업량 : 금 5,204백만원 중 잔여사업비 / 사업량 : 35척 내외
(예산범위내 변동가능)
 - 사업량은 업종별(낭장망, 각망) 균등 배분하여 감척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가. 신청기간 : 2019. 8. 1.(목) ~ 8. 6.(화)
 - ※ 신청접수는 1회에 한하며 재신청 불가(단, 첨부서류 보완은 신청기간내 가능하나 폐업지원금은 수정 불가)
- 나. 신청장소 : 여수시 어업생산과 생산팀(담당자 : 임혜경 061-659-3947)

3. 사업대상 업종 및 우선순위

- 가. 대상업종 : 어구(낭장망, 각망), 관리선, 시설물(자숙장비, 건조기 등)
- 나. 우선순위
 - 1)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자
 - ※ 폐업지원금 기초가격 : 낭장망 41,246천원, 각망 36,270천원
 - 2) 허가 폐업신청자로서 나이가 고령인자
 - 3) 허가 폐업 신청건수가 적은 자
 - 4) 어업허가 기간(기간만료에 의한 신규허가 기간 포함)이 오래된 자

4. 제출서류

-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 나.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 다. 어구사진 1장, 시설물 포함하여 폐업할 경우 시설물 사진 각1장
- 라. 관리선 포함하여 폐업할 경우 어선원부 1부 및 선체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 마.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1부.(해양경찰서 출입항신고실적)
 -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감척목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바. 면세유 구입실적 1부(해당 수협장 확인 요함)
- 사. 수협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1부
- 아. 조업사실 확인서(어촌계장 직인 날인) 1부

5.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어업인
 - 1)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자로서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한 자
 - 2)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이 있는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사업자 부족시 2년간 90일 이상
 - 3)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이 있는자
 - ※ 최근 1년 이내 어선(어구)소유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도 신청 가능
 - 4)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자(제출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나. 신청제외 대상

- 1) 사업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감척사업을 실시한 자 중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2) 과거 연안어선 감척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3) 2톤 미만 어선으로 임의 대체로 측정하여 변경등록 한 이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선은 제외
- 4) 신청기간 내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
- 5)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낭장망 41,246천원, 각망 36,270천원)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

6. 불이행시 제재조치

- 어선(어구)감척 대상자는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어구)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연안어선 [정치성 구획어업] 감척 대상자 신청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19. 7. 15.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감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체의 실태조사 등)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건설업 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기에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감경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감경 전	감경 후		
남도엔지니어링(주) (남*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영업정지1개월 (2019. 7. 9. ~ ~2019. 8. 8.)	영업정지 15일 (2019. 7. 9. ~ 2019. 7. 24.) (15일 감경)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자료 미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및82조제5호

2. 공고 기간: 2019. 7. 15. ~ 7. 29.(15일)

3.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여 수 시 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기 간내에 미지급으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여 수 시 장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 아래
2. 시정명령일시 : 2019. 7. 15.
3.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9. 7. 15. ~ 7. 29.
4.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4호
5.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 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기 간내에 미지급으로 및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 함
6.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 정 명 령 대 상 업 체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부건산업개발(주)	이*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재 장비대금 기간내 미 지급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사업자등록 폐업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9. 7. 31.)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기간 : 2019. 7. 16. ~ 2019. 7. 30.(15일간)
5. 공고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	처분내용
일반 음식점	행복식당	백*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2-7 (학동)	2012.01.2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일반 음식점	북경 샤브샤브	YU SH***EN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3길 19, 1층 (학동)	2019.04.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9년 7월 30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061)659-4228

공 고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 개선을 위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회계규칙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과제임)

2.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 “계리원칙에 의한”을 “원칙에 따른”
 - ⇒ “계리한다”를 “처리한다”
-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 ⇒ (제2항, 제4항) “기장한다”를 “기록한다”

○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을 “사업·자본 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 (제1항) “얻은” 을 “얻었음”

⇒ (제2항) “기장” 을 “기록”

⇒ (제3항) “채무확정시” 을 “채무확정 시”, “증빙서류에 의하여” 를 “증명서류에 따라”, “기장” 을 “기록”

⇒ (제4항) “의하여” 를 “따라”

○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을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 (제1항) “재고계리를 행하는” 을 “재고처리를 하는”

⇒ (제3항) “기장 한다” 을 “기록한다”

○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제2항) “기록하여 정리한다” 를 “기록·정리한다”

○ 제87조(입고절차)

⇒ “기장·관리” 를 “기록·관리”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 “기장·관리” 를 “기록·관리”

3. 회계규칙 일부개정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19. 7. 15. ~ '19. 8.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 우)59703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동)
여수시장(하수도과장)

나) 전 화 : 061)659-4976, 팩스 : 061)659-5860

다) 이메일(E-Mail) : kymisc1017@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안 1부.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원칙에 의한”을 “원칙에 따른”으로, “계리한다”를 “처리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기장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을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얻은”을 “얻었을”로,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무확정시”를 “채무확정 시”로, “증빙서류에 의하여”를 “증명서류에 따라”로, “기장”을 “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을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고계리를 행하는”을 “재고처리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장”을 “기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하여 정리한다”를 “기록·정리한다”로 한다.

제87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 내지 별지 제28호3 서식)에 의하여 수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 절차 및 기장) 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생략)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

② -----

----- 기록-----.

③ 채무확정시-----
----- 증명서류에 따라
----- 기록-----
-----.

④ -----
----- 따라 -----

-----.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 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 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생략)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청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 정리한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생략)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

----- 기록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록하여 -----.

③ -----

----- 기록·정리한다.

제87조(입고절차) -----

----- 기록·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

장 · 관리하여야 한다.

록 · 관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문)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관리자: 상하수도사업단장
2. 기업출납원: 하수도과장
3. 수입원: 하수행정팀장
4. 지출원: 하수시설팀장
5. 자산출납원: 하수행정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하수행정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하수행정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3천만원이하의 용역 및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와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지방공기업 관계법령과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시행령」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 기준과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2절 회계장부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금수입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 다. 자금지출 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 라.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 마.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기타장부
 -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 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 서식)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다.
-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⑥ 정정 시에는 약품 사용 및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 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 및 전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 직접 쓰는 경우는 서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금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통제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절 수입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6조제3항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과 지정 금융기관이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매일 수납액을 7일 이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하수도사업회계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7호 서식 내지 별지 제28호3 서식)에 의하여 수표 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① 재고처리를 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건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를 발행한다.

-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50조(개산급의 정산)**
-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 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포함)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임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리게 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 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절 지정 금융기관

제68조(지정 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하수도사업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하수도사업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를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0호 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 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1 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40호 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④ 지정 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43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분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하여 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자산손실(망실, 훼손)보고서(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전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①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2절 고정자산

제100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중인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9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300m/m이하의 하수관
2.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고정자산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사주무 담당은 고정자산 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 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11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공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7장 채권관리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로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0. 28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31 규칙 제588호)